

제 283회 임시회
행정자치위원회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희걸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

2018. 9. 6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희걸
(더불어민주당, 도시안전건설위원회)

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은 오늘 문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지난 7월 24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본 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이 2000년 10월 10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바 해당 지급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하는 한편, 지급범위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입니다.

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 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교통비 8,000원 이내, 급식비 12,000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본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.

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!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